

의안번호	제 961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2년 1월 10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

#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61
----------	-----

제출연월일 : 2022년 1월 10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충청북도의 공예문화산업을 보면 공예사업체의 종사자, 연간 매출액 등의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공예인력 양성기관 및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행정적,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이에 따라, 도에서는 우수공예품 개발지원사업, 충청북도 공예품대전 운영, 우수공예품 홍보·판매전 운영 등 공예문화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률성, 신뢰성 등을 모두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전문성, 능률성 등이 요구되는 공예문화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정하여 동조례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2022.3.) ~ 2024. 12.

나. 위탁사무(성격) 및 소요예산(105백만원)

- ①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사업(전문성) : 27백만원
- ② 충청북도 공예품대전 운영사업(전문성) : 28백만원
- ③ 우수공예품 홍보·판매전 운영사업(전문성) : 40백만원
- ④ 공예인 교육아카데미 개설 운영사업(전문성) : 10백만원

다. 수탁기관 : 공예문화산업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라. 위탁방법 : 수탁기관 공개모집·선정 후 위·수탁 협약체결

마.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바. 민간위탁 추진근거

-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업무의 위탁)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충북 공예문화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공예문화산업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아. 향후계획

-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 2022년 3월~

### 3. 관계법령

□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우수공예품개발비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 특화 우수공예품의 개발을 장려하고 새로운 공예품의 상품화를 위하여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발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개발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충청북도 공예품대전) ①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우수공예품 발굴을 위하여 충청북도 공예품대전(이하 “공예품대전”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예품대전에 우수한 공예품을 출품한 사람에게 상장과 표창장을 줄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예품대전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우수공예품 홍보·판매전) 도지사는 우수공예품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하여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공예인 역량강화 교육) 도지사는 공예인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 소양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8.>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되는 사무
4. 그 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
5. 삭제 <2020. 12. 18.>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8.]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

# 공예문화산업 육성지원 사업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공예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예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2에 의한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보고임.

## I 추진근거

-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4조의2

## II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 : 공예문화산업 육성지원 4개 사업
  - ①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사업
  - ② 충청북도 공예품대전 운영사업
  - ③ 우수공예품 홍보·판매전 운영사업
  - ④ 공예인 교육아카데미 개설 운영사업
- 위탁기관 : 공예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위탁기간 : 2022. 3.(공모 및 협약일) ~ 2024. 12. 31. (3년)
- 위탁금액 : 매년 예산편성액 이내 ※ '22년 기준 105백만원
- 사업내용
  - 우수공예품 개발지원의 계획수립 및 운영 등
  - 충청북도 공예품 대전 추진계획 수립 및 진행 등
  - 우수공예품 홍보·판매전 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관 설치 등
  - 공예인 교육아카데미 계획수립 및 운영 등

### Ⅲ 추진절차

① 의회동의	· 민간위탁 의회 동의 ※ 충청북도의회 제396회 임시회 회기 중
② 공개모집	· 수탁기관 선정 - (방법) 공개모집(공고일로부터 7일) - (자격) 도내 공예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③ 수탁심사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 (구성) 6~9명 정도 - (심사) 공신력, 사업계획, 사업수행능력 등 - (선정) 심사기준표 의함(고득점자 선정)
④ 협약공증	· 협약체결 및 공증
⑤ 사무개시	· 위·수탁사무 개시

### Ⅳ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비고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공예산업 육성 지원사업 관련 <b>전문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사업추진</b> 을 위해 <b>공예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수행</b>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공예문화산업 분야는 전문성이 요구되며 공예 업체와 관련 단체 등의 <b>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속적, 안정적 지원</b> 이 가능하며 - 공무원들이 <b>전문성 부족 및 잦은 인사이동</b> 으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	
③ 경제적 효율성	- 전문성을 갖춘 민간 위탁기관에 <b>소정의 위탁수수료 지원</b> 으로 매년 사업계획에 따른 <b>체계적인 사업을 추진</b> 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적임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 공예문화산업 분야의 <b>전문지식, 네트워크 활용</b> 으로 공예문화산업 육성지원 사업의 <b>질적 향상</b> 도모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매년 사업계획에 기반하여 <b>목표 대비 실적평가</b> 등을 통해 <b>사업성과 측정</b>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는 수탁기관에 대한 <b>지휘·감독 권한</b> 이 있으며, 위·수탁 협약을 통해 <b>운영방식 및 사업계획을 관리</b> 함으로써 <b>투명성</b> 제고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 (지휘·감독)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 민간의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b>민간네트워크 활성화 및 열악한 공예문화산업을 지원</b> 하여 지역 공예인들에게 <b>적정한 서비스 공급</b> 가능	

## V 검토결과 : 적정

- 우수공예품 홍보·판매전 운영, 공예인 교육아카데미, 충청북도 공예품대전,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은 충청북도의 공예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충북 공예문화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공예문화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사무이며
- 공예문화산업 분야는 전문지식이 요구되며 공예인, 관련 단체 등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추진시 경제성, 안정성, 지속성을 기할 수 있음
- ▶ **민간의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예품 홍보·판매의 실행력을 높이고 공예인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IV 향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제출·심의 : '22.01월
- 수탁기관 선정 : '22.02월
-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 : '22.03월
- 수탁사무 개시 : '22.03월



## 우수공예품 개발지원

### □ 사업목적

- 우리 지역의 문화적 특색에 맞는 공예품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공예업체의 자립기반 마련
- 우수공예품 개발·육성 및 상품화 유도 등을 통한 충북 공예문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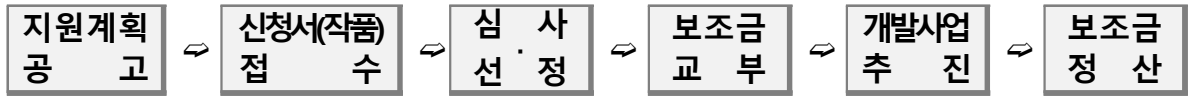
- 사업기간 : 2022. 5. ~ 12.
- 사업예산 : 27,000천원(지원금 24,000천원, 운영비 등 3,000천원)
- 지원근거 : 문화산업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10조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내용 :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발굴·선정 및 우수공예품 개발지원  
※ 상품디자인, 브로셔, 포장디자인 개발비 등 지원

### □ 지원절차

- 대 상 : 8개 업체 선정(충북도 소재)
- 지원금액 : 업체당 3,000천원
- 지원분야 : 목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기타 등 공예분야
- 지원자격
  - 도내에 사업장을 둔 공예품 생산업체 또는 공방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
  - 사업자등록을 1년 이상 유지한 공예품 생산제조 사업자
- 업체선정
  - 심사위원 : 공예 및 디자인 관련 전문가 5명 이내

- 심사방법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평가 기준표에 따라 선정위원회 평가

○ 추진일정



□ '21년 추진실적

- 8개 업체지원 : 상품개발5, 포장디자인1, 브로슈어2 ※ 업체당 3백만원
  - 상품개발(5) : 토모, 손끝사랑, 유리마루, (주)도가패션, 오네마루공방
  - 디자인(1) : 청주맥간아트,
  - 브로슈어(2) : (주)복드림, 섬유아트

□ 향후계획

- 수탁기관 선정(공모) : '22. 3.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 '22. 3.
-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 : '22. 5.~12.

# 충청북도 공예품대전 운영

## □ 사업목적

- 지역 특성을 살린 우수공예품 개발장려를 통한 공예문화산업 활성화
- 전통공예기술의 전승과 새로운 기술개발 등 공예문화산업 가치 재창조
- 문화적 특색과 지역 특성이 담긴 우수공예품 개발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5. ~ 12.
- 사업예산 : 28,000천원
- 지원근거 : 문화산업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10조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내용 : 시상식 및 개막행사, 출품작 전시, 부대행사(시연 및 체험 등)

## □ 추진절차

- 출품공모
  - 계획공고 및 공모: 5~6월
  - 공모대상: 전통공예의 기술과 조형성 등을 기본바탕으로 현대적 디자인 트렌드에 부합되며, 아름다움과 상품성이 결합된 창의적 공예품
  - 출품분야: 목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기타 공예분야
  - 응모자격 및 제한
- 응모 및 접수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 출품수량: 1인 1작품
- 심사
  - 심사기준: 1차(낙선작과 입상작 선별), 2차(입상작 수상서열 결정)
  - 심사위원: 업계, 학계,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7명 내외)

- 시상 및 전시
  - 기간: 7월 중
  - 시상내역: 대상 1(300만원), 금상 1(200만원), 은상 2(각 100백만원) 동상 3(각 50만원), 장려상 7(각 30만원), 특선 11, 입선 20
  - 입상자 지원 및 특전
    - 제51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출품자격 부여
    - 충청북도 우수공예인 및 업체 지정 자격 부여(예선: 동상이상, 본선: 장려이상)
    - 충북공예협동조합[올 craft chungbuk] 각 전시판매 홍보관 참여자격 부여
    - 충청북도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 응모작품 반환
  - 낙선작: 전시회 종료후 개인을 통한 반환
  - 입상작: 본선출품 후 입상결과에 따라 조치(주관기관 별도 지정일자에 반출)
    - \* 단, 국무총리상 이상 수상작은 국고에 귀속

## □ '21년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21. 7. ~ 11.
- 장 소 : 청주 문화제조창(한국공예관 갤러리 3관)
- 사 업 비 : 28,000천원(도비)
- 사업주관 : 충북공예협동조합

구 분	지역예선 2021년 충북대전(충북도)	본 선 제51회 한국대전(문화재청)
개최기간	2021. 5. 17. ~ 7. 11.	2021. 08. 17. ~ 11. 28.
개최장소	청주 문화제조창 3층	대전 컨벤션센터
참가작품	80개 작품	25개 작품
입상작품	45개 작품 (대상 1, 금상1, 은상 2, 동상 3, 장려상 7, 특선 11, 입선 20)	13개 작품 (장려상 3, 특선 6, 입선 4)
비 고	수상작 시상(7. 9)	

## □ 향후계획

- 수탁기관 선정(공모) : '22. 3.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 '22. 3.
- 충청북도 공예품대전 운영 : '22. 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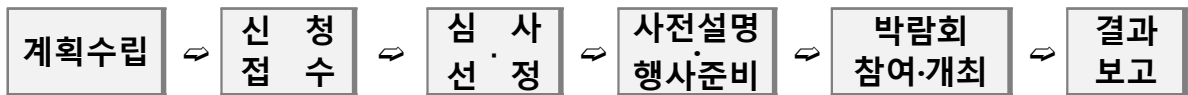
# 우수공예품 홍보 · 판매전 운영

## □ 사업목적

- 우수공예인, 공예명인 등 충북공예인 및 업체가 제작한 우수한 지역 특화 공예품의 홍보 · 판로시장 개척
- 고부가가치 공예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새로운 공예상품의 판매·유통 체계 구축을 통한 공예문화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6. ~ 12.
- 사업예산 : 40,000천원
- 지원근거 : 문화산업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10조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내용 : 우수공예품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석 또는 충북공예페어 개최
- 지원대상 : 도내 공예인 및 공예업체
- 추진일정



## □ '21년 추진실적

- 기 간 : 2021. 9. ~ 12.
- 사 업 비 : 40,000천원(도비)
  - ※ 임차료(부스등) 29,500, 운영비 520, 홍보비 6,700, 행사운영인력 1,680, 위탁수수료 1,600
- 주요내용 : 2021청주공예비엔날레 참가를 통한 우수공예품 홍보 · 판매전 운영 <2021 청주공예비엔날레>
  - ▶ 개최기간 : 2021. 9. 8 ~ 10.17(40일)
  - ▶ 개최장소 : 청주문화제조창
  - ▶ 주최 · 주관 : 청주시 /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
  - ▶ 개최규모 : 30개국 500여 작가/ 관람객 6만명(예정)
    - ※ 충북공예워크숍(공예시연, 홍보, 판매): 충북공예협동조합주관(40개업체, 25개 부스)

## □ 향후계획

- 수탁기관 선정(공모) : '22. 3.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 '22. 3.
- 충청북도 우수공예품 홍보 · 판매전 운영 : '22. 6.~12.

# 공예인 교육아카데미 개설 운영

## □ 사업목적

- 공예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공예인 역량강화 교육
- 공예인에게 정보공유의 중요성 및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방법 등 교육
- 전통 및 현대공예 우수상품의 개발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판매, 유통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한 공예인 역량 강화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7. ~ 12.
- 사업예산 : 10,000천원
- 지원근거 : 문화산업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10조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내용 : 충북공예인 역량강화교육 아카데미 시행
- 교육인원 : 100명
- 교육대상 : 충북 공예인, 공예예비창업자, 공예문화산업 관련자 등
- 교육분야
  - 공예디자인, 지식재산권, 마케팅, 유통
  - 공예문화산업 정책 및 활용
- 추진일정



## □ '21년 추진실적

날 짜	과 목	내 용	비 고
11. 9	지식재산권 마케팅 사례발표	브랜드 마케팅 및 판로개척, 아이디어와 지식재산권 공예인 사례발표-1	청주(1차)
11.16	디자인 사례발표	디자인의 변화(트렌드), 지역문화예술 - 축제, 공공미술 공예인 사례발표-2	청주(2차)
11.23	공예산업 정책 및 활용 사례발표	공예산업정책 특강, 정부지원정책을 활용한 경영전략 공예인 사례발표-3	청주(3차)
11.27	지식재산권 공예디자인, 마케팅, 유통	브랜드 활용 및 지식재산권(특허 등) 활용 브랜드마케팅 및 판로개척, 전통과 현대의 융복합 트렌드	음성
12.08	지식재산권 공예디자인, 마케팅, 유통	브랜드 활용 및 지식재산권(특허 등) 활용 브랜드마케팅 및 판로개척, 전통과 현대의 융복합 트렌드	제천

## □ 향후계획

- 수탁기관 선정(공모) : '22. 3.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 '22. 3.
- 공예인 교육아카데미 개설 운영 : '22. 5.~12.